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

1. 검역 일반

- '13년 5월 30일부터 수입식품 사전신고(Prior Notice) 강화
 -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테러 이후 미국 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6월 12일 제정된 법률임
 - FDA는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내에 도착하기 이전 사전신고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분석 및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,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의 유통을 보장한다는 취지임
 - 5월 30일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1년 5월부터 임시 규칙이었던 법안을 최종 법안으로 공표와 동시에 발효됨
- 수입식품 사전신고제(Prior Notice) 주요 내용
 -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해야함
 -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할 의무가 발생함
- 수입식품 사전신고제(Prior Notice) 관련 주요 이슈
 - 현재까지 사전신고제와 관련하여 15가지의 의견제시(커멘트)가 있으며 대부분 법안의 조건과 거부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 문의함
 - 식품 수입 관계자들 중 일부는 FDA가 다른 국가로부터 통관이 거절됐다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수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함
 - FDA는 사전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에 의한 리포트를 요구함

○ 시사점 / 대처방향

-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의 기본취지와 함께 캐나다와 같이 인근 국가에서 거절당한 식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할 경우, 차선으로 미국내 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음
- 강화된 사전신고제 시행으로 대미 수출업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가별 식품안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미국수입업자들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력을 요구하게 될 것임

2. 관련 웹사이트

FDA 게재 내용:

FDA Issues Final Rule: Information Required in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
<http://www.fda.gov/Food/NewsEvents/ConstituentUpdates/ucm354209.htm>

미국 관보 게재 내용:

Information Required in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
<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articles/2013/05/30/2013-12833/information-required-in-prior-notice-of-imported-food>

II

수입제도 현안

1. 통관 보류, 거부사례

○ 주요내용

- 품목: 코다리(반건조 명태, Half dried Pollack)
- 사유: 살모넬라균 발견으로 통관 보류
- 결과: 담당 관세사가 FDA가 인증한 시험기관에 재의뢰한 후 살모넬라가 발견되지 않아 통관보류해제(털리스)됨

○ 시사점 / 대처방향

- 식중독균이 존재하는 제품이 검역을 통과하더라도 현지 마켓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관련 수산물 전체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리콜과 사후처리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
- 식중독균이 발견될 경우 재검사를 통해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기간동안 통관이 보류됨에 따라 선도 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함
- 식품 안전에 그 어느 국가보다 민감한 미국이 수산물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식중독균에 대한 검역으로 대미수출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함

2. 검역 불합격, 폐기, 반송 사례

○ 주요내용

- 품목: 냉동굴(Frozen Oyster)
- 사유: 한국산 굴 수입재개 이후 패류선적자리스트(ICSSL)에 등록되지 않은 수출업체를 통한 굴을 수입
- 결과: 수출 재개 이후라도 패류선적자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한국산 굴은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반송조치됨

○ 시사점 / 대처방향

- 미국 FDA의 패류선적자리스트(ICSSL)에 등재된 업체의 굴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부분의 수출 및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알고 있으나 소수의 업체들이 실제로 모르거나 고의로 통관을 진행하려 하는 경우가 발생함
- 한국산 굴의 경우는 수입재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미수출을 진행하는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들 모두 주의 깊게 살펴야 함
- 또한 미 검역당국도 한국산 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출입 관계자들이 ICSSL에 등록된 업체들을 통해 미 통관, 검역기준에 맞춰 수입하는지 철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함

○ 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hippers List(ICSSL) 웹사이트

<http://www.fda.gov/Food/GuidanceRegulation/FederalStateFoodPrograms/ucm2006753.htm>

2013년 5월 미국 뉴욕 통관보류사례 세부내역 (총 8건)

발생 일자	품목	기관	분야	통관 억류 사유	결과
5/8/13	식초	CBP	샘플링	식초 샘플의 산도 테스트	통관보류 해제
5/13/13	반건조 명태	FDA	유해물질 함유	살모넬라균 발견 (재검 후 통과)	통관보류 해제
5/17/13	시푸드 믹스	FDA	라벨링	영문 라벨 표기 누락	통관보류 해제
5/23/13	건조 버섯	FDA	라벨링	영문 라벨 표기 누락	통관보류 해제
5/23/13	냉동굴	FDA	증명서 미제출	패류선적자리스트(ICSSL) 미등록 업체	반송 처리
5/28/13	바나나 우유	USDA	허가증 미비	동물건강인증서(Animal health certificate) 요청	통관보류 해제
5/29/13	쌀음료	FDA	불순물 함유	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, 포장	반송 처리
5/31/13	스프 베이스	USDA	성분 표기 미비	성분 표기 리스트가 포함되지 않음	통관보류 해제